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736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연장(주철현의원안)	2
2.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 적용 기한 연장(주철현의원안)	6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이만희 의원안, 주철현의원안)	10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주철현 의원안)	16
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이만희의원안, 주철현의원안)	20
6. 농어업용 기자재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주철현의원안)	25
7.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 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주철현의원안)	31

I. 개요

1.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73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주철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1. 23.
- (3) 회 부 일 : 2025. 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어자녀 등이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어업·수산 분야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어가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제1호, 제106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주철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의3) ○ 대상 -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일정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2028년 12월 31일

*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 개정안은 2025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¹⁾에서는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양식업 등 직접 어업에 사용²⁾한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³⁾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함.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조세특례의 감면실적은 2023년 약 25억원이고, 2024년은 약 20억원, 2025년은 약 22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 (실적)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25	20	22

* 자료: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이 조에서 “양식등”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참고로, 2023년 양식어업가구는 1만 938호로 2019년 대비 71.5%, 2023년 양식어가인구는 2만 4,337명으로 2019년 대비 69.3%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 현황]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어업가구 (호)		50,909	43,149	43,327	42,536	41,775
어가인구 (명)		113,898	97,062	93,798	90,805	87,115
	양식어업가구(호)	15,292	10,335	11,228	11,174	10,938
	양식어가인구(명)	35,136	25,205	26,456	25,829	24,337

* 자료: 통계청(농림어업조사 중 「어업형태별 어가, 어가인구」)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음.

첫째, 동 조세특례는 육상 양식어업인이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젊은 어업인의 유입을 유도하여 양식산업의 인력난 해소, 어촌의 고령화 방지 및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음.

향후 양식어업 종사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므로 수산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양식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필요할 여지가 있음.

둘째, 동 조세특례와는 달리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⁴⁾ 및 자경산지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양도세 감면⁵⁾의 경우에는 별도의 일몰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조세특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지난 2022년 정기회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바 있음.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2.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 적용 기한 연장(주철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71조) ☐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농지·어선·어업권·축사용지 등을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주철현의원안)

*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동 특례제도는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조기이전 하도록 함으로써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1986년에 도입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6)에서는 자경농민 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등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초

6)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지,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1억원(5년간 증여세액 합계 기준)을 한도로⁷⁾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동 특례제도가 적용된 감면세액은 2021년도 773억원, 2023년도 654억원으로 감소하였고, 추후 400억원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전망)	2025(전망)
감면액	773	712	654	408	449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조세감면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경자유전의 원칙, 농·어민 이익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으로 자경농민 등이 농지등을 상속하는 경우 적용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⁸⁾의 경우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속세제의 기본 공제제도로써 계속 운영되고 있음.

둘째,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7)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④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고려할 때 증여세 감면 혜택의 계속 적용을 통해 농어업 인력의 세대교체 촉진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농가 경영주는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47만 7천 가구(전체 농가의 47.8%)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34만 2천 가구(34.2%), 50대는 14만 1천 가구(14.2%)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2.6%) 경영주는 증가하였으나 40세 미만(-22.7%), 40대(-20.9%) 등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음.

[2023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3	999 (100.0)	5 (0.5)	33 (3.3)	141 (14.2)	342 (34.2)	477 (47.8)
증 감	-23.8	-1.6	-8.7	-16.7	-8.8	12.1
증감률	-2.3	-22.7	-20.9	-10.6	-2.5	2.6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2023년 어가 경영주는 60대가 1만 6천 3백 가구(전체 어가의 39.0%)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1만 6천 가구(38.2%), 50대 6천 3백 가구(15.2%)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3.1%) 경영주는 증가하였으나 40세 미만(-22.0%), 40대(-14.4%), 50대(-6.8%) 순으로 감소하였음.

[2023년 경영주 연령별 어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3	41.8 (100.0)	0.5 (1.3)	2.7 (6.4)	6.3 (15.2)	16.3 (39.0)	16.0 (38.2)
증 감	-0.8	-0.1	-0.4	-0.5	-0.2	0.5
증감률	-1.8	-22.0	-14.4	-6.8	-1.1	3.1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다만, 이와 같은 영농·영어가의 고령화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젊은 후계자에게 농지 등이 조기에 이전 될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와 같이 영구적 제도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이만희 의원안, 주철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2조) ○ 대상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특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 접대비 등을 세무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 과세표준 =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계산한 금액 ○ 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 단, 2016. 12. 31. 이전 조합법인가간 합병한 경우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12%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이만희의원안, 주철현의원안)</u> ○ 시행일: 공포한 날(이만희의원안) 2026. 1. 1.(주철현의원안)

* 이만희의원안 2024. 12. 2. 발의(의안번호 6093),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 개정안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말에서 3년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72조는 특정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접대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임.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세를 위하여 복잡한 세무조정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과세표준 20억 이하는 9%, 초과분은 12%)을 적용받는 혜택이 있음.⁹⁾

다만,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선택한 조합법인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9)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 조합법인의 경우 1998년 이전까지는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포함되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전부개정으로 대부분의 공공법인을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로 편입시키고, 조합법인에 대해서만 동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주요 개정연혁]

시행연도	개정내용
~1998	·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로 운영
1999	· 과세표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별도 세무조정 없음) · 세율: 12%
2001	·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세무조정 신설
2009	· 세율 인하: 12% → 9%
2013	· 세무조정 대상 확대: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업무무관 경비 + 과다경비 등 6개 항목
2015	· 세율구간 신설: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시 12%
2016	· 2016년까지 합병 시 신설(존속)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12%
2018	· 적용기한 3년 연장(2020년 말까지)
2021	· 적용기한 2년 연장(2022년 말까지)
2023	· 적용기한 3년 연장(2025년 말까지)

- 동 특례에 따라 2023년에는 총 5,113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에는 3,289억원, 2025년에는 3,444억원의 조세지출이 예상되고 있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451	2,964	3,636	3,271	3,347	4,291	5,113	3,289	3,444

주1: 2024년, 2025년은 전망치임

주2: 2019년 신고기준 과세특례 적용대상 조합법인의 수는 2,945개(새마을금고 919개, 신협 865개, 농협 628개 등)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영세한 개별 조합법인은 전문적인 세법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 절차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지속적으로 경감해줄 필요가 있음.

둘째,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 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특례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조세지원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다른 공익단체와 비교할 때 지원수준이 과도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단계적인 세무조정 항목 확대 등을 통해 지원수준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¹⁰⁾ 2020년 심층평가에서는 직접적인 조합원 지원제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¹¹⁾.

특히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동 특례제도가 조합원에 대한 지원 목적이 더 크다면 직접적이며 정책효과를 유도하기에 더 바람직한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이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다른 법인과 의 형평성,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¹²⁾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IV)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p. 7~8.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VI)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p. 12-14.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p.139.

문 의 처
02)6788-5154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주철현 의원안)

현행	개정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2) ☐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 ☐ 내용: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 적용기한: <u>2025년 12월 31일까지</u>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내용: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8년 12월 31일까지(주철현의원안)</u>

* 주철현의원안 2025.1.23. 발의(의안번호 7736)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6년 도입되었으며,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연 240만원을 납입한도¹³⁾로 함.

만기 시 저축금액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본금리에 따른 이자 외에 만기 시 ① 일반 농어민에 대하여는 평균잔액의 2.7%(3

1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①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240만원으로 한다.

년납), 7.5%(5년납)의 저축장려금을, ② 저소득농어민에 대하여는 일반 농어민의 저축장려금에 6.3%(3년납), 16.5%(5년납)을 가산하여 지급¹⁴⁾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¹⁵⁾에 따라 소득세·증여세 및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상품의 특성상 오랜기간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는데, 2011년 이후에만 5차례 적용기한이 연장¹⁶⁾되었으며, 동 비과세 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35억원, 2023년 43억원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1.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납입한 저축원금의 저축기간 중 평균잔액(이하 “평균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7
 -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15)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16) 2011년 이후에만 5차례(2011. 12. 31. → 2014. 12. 31.까지 → 2017. 12. 31.까지 → 2020. 12. 31.까지 → 2022. 12. 31.까지 → 2025. 12. 31.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음.

[연도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전망)	2025(전망)
감면액	35	37	43	67	7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농어업 분야는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FTA 확대 등에 따른 시장 개방, 이상기후 및 환경오염 등 대내외적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농어민의 수입은 기후, 계절, 시장수요 및 공급 등에 따라 불규칙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민의 안정적인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어가 가구당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2010~2020년 사이 평균 62.3% 수준¹⁷⁾)인 점을 고려할 때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 차원에서도 세제지원의 유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셋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저축장려금 지급과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1976년 도입된 이래 오랜 기간 농어민의 주요 저축수단이 되어 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과세특례는 정부 예산 출연을 통한 저축장려금의 지급에 더하여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저소득 농어민이 아닌 농어민에게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17)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p. 161.

문 의 처
02)6788-5161

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이만희의원안, 주철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 ○ 대상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 대상소득: 조합원·회원 등의 출자금 및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 한도: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 비과세 기한: <u>2025년 12월 31일까지</u>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 한도: (현행과 같음) ○ 비과세 기한: - <u>2028년 12월 31일까지(이만희·주철현의원안)</u>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89조의3) ○ 대상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 대상소득: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조합원·회원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 ○ 한도: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 비과세 기한: <u>2025년 12월 31일까지</u>	☐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 한도: (현행과 같음) ○ 비과세 기한: - <u>2028년 12월 31일까지(이만희·주철현의원안)</u>

* 이만희의원안 2024. 11. 29. 발의(의안번호 6035), 이만희의원안 2024. 12. 3. 발의(의안번호 6138),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조합 등¹⁸⁾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조합 등의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회원(이하 “조

18)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를 말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제8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제83조의3).

합원등”이라 함)인 농어민·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하고, 2026년에는 5%, 2027년 이후에는 9%로 저율 분리과세 할 예정임.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서민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상호금융의 재무구조 개선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조합 등에 대한 조합원등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용고배당소득), 20세 이상 조합원등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적용기한이 3회 연장되었다가 2001년에 영구 비과세로 전환되었음. 이후 2007년에 일몰이 재도입되어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등 6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됨.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1996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등 11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음.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 도입 당시 200만원에서 1987년 500

만원, 1992년 1,000만원, 2024년 2,000만원까지 증액되었고,
 예탁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부터 100만원 한도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1978년 500만원, 1987년 1,000만원, 1991년 2,000만원, 2009년
 3,000만원까지 증액되었음.

또한, 2020년 세법개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조세특례
 제한조항¹⁹⁾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과세특례 적용
 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3,760억원의 실적을 보였으나,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출
 자금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개정 되면서 2023년에
 는 7,09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4년 이후에는 1조원을 초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전망)	2025(전망)
감면액	3,760	3,724	7,094	12,356	13,716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및 제89조의3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
 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
 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
 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
 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첫째, 농어민의 안정적인 재산형성 지원과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 등을 위해서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농어민의 수입은 기후, 계절, 시장수요 및 공급 등에 따라 불규칙적인 측면이 있고 농어가 가구당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2010~2020년 사이 평균 62.3% 수준²⁰⁾)으로 농어민의 안정적인 재산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저축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2년 실시된 조세특례 심층평가²¹⁾에서는 동 제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의 3/4정도가 저소득층에 주어지고 있고, 서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음.

셋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될 경우 조합원 등의 자금이탈을 유발하여 상호금융의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등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져 조합원등이 추가로 이탈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p. 161.

21)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2022. 9.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합 등 회원에 대해 소득·자산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동 과세특례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²²⁾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소득 요건 등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자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²³⁾에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한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둘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수신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기능하는 측면은 있으나, 재정여건 상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수 있고 타금융기관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22) 2023년 실적기준 동 과세특례가 저축지원 조세지출 항목 중 가장 큰 규모임

23)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p. 10

6. 농어업용 기자재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주철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 제1항) ○ 영세율 적용대상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제6호)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2028년 12월 31일(주철현 의원안)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제(제106조 제2항) ○ 면제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제9호)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2028년 12월 31일(엄태영·주철현 의원안)

* 엄태영의원안 2025. 1. 15. 발의(의안번호 7527),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 개정안은 2025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동 특례제도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함으로써 영농비용 절감을 통해 농어업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로써,

개정안은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할 때, 농어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동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임.

□ 현재 농민·임업에 종사하는 자·어민이 공급받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²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동 제도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완화하고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에 따른 2024년 감면세액은 2조 2,408억원임.

또한, 농어업용 기자재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1997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2024년 감면 세액은 29억원으로 전망됨.

[농어업용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도의 조세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전망)	2025(전망)
영 세 율	17,763	18,481	21,886	23,047	22,408	23,586
수입면세	21	34	46	24	29	31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24)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 기계, 임업용·어업용·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함.

첫째, 농·어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80%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므로,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농가·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연 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15년	37,215	64.4	43,895	75.9	57,800
2016년	37,197	63.5	47,077	80.3	58,613
2017년	38,239	63.7	49,016	81.7	60,031
2018년	42,066	64.9	51,836	80.0	64,822
2019년	41,182	61.8	48,415	72.6	66,660
2020년	45,029	62.2	53,187	73.5	72,363
2021년	47,759	65.7	52,392	72.1	72,688
2022년	46,153	63.6	52,911	72.9	72,548
2023년	50,828	67.5	54,779	72.7	75,348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실질소득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둘째, 농어업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²⁵⁾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기계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어민이 기자재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5) 통계청의 「농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수는 2007년 123만호에서 2020년 103만호로 15.8% 감소하였고, 어가 수는 2007년 7만 4,000호에서 2020년 4만 3,000호로 4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도 외에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10억원 이하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및 5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66조·제67조·제68조),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²⁶⁾

[농업인등에 대한 조세정책]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 10억원 이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69조	·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6)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는 개략적으로 32개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둘째,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타당성과 효과성이 확보되나 기자재 사용량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비료와 사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문제 발생이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기본적으로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 농어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반면, 소규모·영세 농어민은 기자재 사용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혜택이 작아 대규모 농어민과 소규모 농어민 간의 세제 혜택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바 있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 등의 조세특례는 원칙적으로 일몰 전에 제도의 효과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농어업용기자재 영세율의 2025년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타당성·개선방안 등을 평가하여 조세특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2022년 정기회에서는 동 제도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

7.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주철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전기사업자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제1호)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2028년 12월 31일
☐ 개별소비세 면제(제111조제1항) ○ 면제대상 - 전기사업자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제2호)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2028년 12월 31일

*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 개정안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비용을 경감하고 도서지방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동 특례제도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된 1977년에 마련된 것으로, 규정이 처음 신설될 당시에는 적용기한이 따로 없었으나 1998년 말 (구)「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2003년 말까지 처음 적용기한을 설정하였고, 이후 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최근 도서지방 자가발전에 사용된 석유량과 조세감면액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3,132kl, 2023년에는 3,695kl, 2024년에는 3,794kl의 석유류가 자가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각각 15억 4,000만원, 17억 3,700만원, 18억 6,400만원임.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감면액 현황]

(단위 : kl, 백만원)

연도별	유종	공급물량	조세감면액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계
2022년	경유	3,130	745	112	194	488	1,539
	휘발유	2	0.6	0.1	0.2	0.3	1.2
	계	3,132	746	112	194	488	1,540
2023년	경유	3,692	879	132	228	495	1,734
	휘발유	3	1.2	0.2	0.3	0.4	2.1
	계	3,695	880	132	229	496	1,737
2024년	경유	3,791	970	146	252	494	1,862
	휘발유	3	1.1	0.2	0.3	0.1	1.9
	계	3,794	971	146	253	494	1,864

주: 교육세는 교통세의 15%, 주행세(지방세)는 교통세의 26%, 부가세는 판매가의 10%의 세금이 붙음.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된 면세유 공급대상 도서지방은 2024년 기준 총 31개 지역임.

[2024년도 지역별 도서지방 자가발전시설 공급 현황]

지역	자가발전 도서지역 수	자가발전 도서지역명
경남	5	지심도, 와도, 국도, 수도, 소매물도
인천	3	지도, 굴업도, 백아도
전남	18	하태도, 장도, 만재도, 상태도, 우이도, 금죽도, 각이도, 소각시도, 안마도, 모항도, 소늬도, 대늬도, 맹골도, 서거차도, 외병도, 광대도, 가사도, 삼마도
전북	2	관리도, 방축도
제주	2	추포도, 횡간도
충남	1	죽도
계	31	

자료: 수협중앙회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육지에 비해 전기의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방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도서지방의 생활 여건은 육지와 비교했을 때 여러 측면에서 열악하며, 특히 전기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가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서지방 거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면세유 제도와 같은 조세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현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비용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²⁷⁾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석유류에 대한 면세가 중단될 경우 세수는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연료

27)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의 추가 지원 요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도서지방의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세유 제도의 중단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더욱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 외에도 도서지방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10억원 이하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및 5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66조·제67조·제68조),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농업인들에 대한 조세정책]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 10억원 이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69조	·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둘째, 면세유 혜택이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 운영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같은 지역 내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할 우려가 있음.

전력망이 연결된 일부 도서지역 주민들은 이미 일반 전력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자가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면세유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 사업자들은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자가발전 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 등의 조세특례는 원칙적으로 일몰 전에 제도의 효과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2025년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타당성·개선방안 등을 평가하여 조세특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2022년 정기회에서는 동 제도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